

『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부모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○ 지원대상자 지급 기준 (안 제4조)

-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

○ 지원대상 사업 마련 (안 제5조)

- 저출산 대책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예산 범위안에서 지원
 - 셋째자녀 이상 출생 시 출산축하금 지급
 - 그 밖에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○ 지원절차 및 방법 마련(안 제6조)

-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읍,면,동장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출생 신고자에게 출산장려금 지원절차를 안내, 매월 1일까지 보건소 통보
- 보건소장은 신청서 검토, 지급여부 결정, 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

4. 참고사항

-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10조 (경제적 부담의 경감)
-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8조 (혼인과 출산)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출산을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의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 임

○ 주요 내용은

-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를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로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
- 저출산 대책을 위하여 셋째자녀 이상 출생시 출산축하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저출산·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, 신생아 출산 가정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“건강가정기본법”, “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” 등 상위법에 근거한 내용으로 관련 규정에 타당하다고 사료됨